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20-0084105
 (43) 공개일자 2020년07월10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K 3/064 (2006.01) A47K 3/12 (2006.01)
 (52) CPC특허분류
 A47K 3/064 (2013.01)
 A47K 3/127 (2013.01)
 (21) 출원번호 10-2019-0000089
 (22) 출원일자 2019년01월02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박화성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539-2
 (72) 발명자
 박화성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5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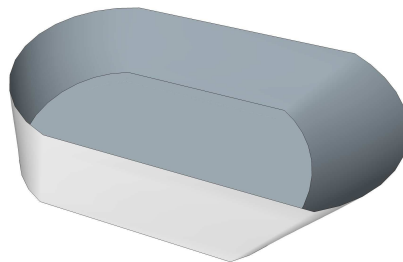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54) 발명의 명칭 **유아욕조**

(57) 요약

본 고안은 유아욕조에 관한 것으로서 머리감기와 비누질, 행굼을 욕조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개선된 욕조이다.

대표도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본 고안에 있어서 욕조 몸체 부에 등받이부를 걸 수 있도록 구멍을 구비하는 것.

청구항 2

등받이부를 욕조의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다리받침을 구비하는 것.

청구항 3

등받이부에서 욕조 몸체에 걸 수 있는 걸이를 구비하는 것.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고안은 유아욕조에 관한 것으로 머리감기와 목욕, 행굼을 욕조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욕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신생아는 근골격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를 목욕할 때에는 주위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가 첫아이일 경우는 산모가 유아를 목욕시키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여 더욱 그러했다. 기존의 유아의 목욕하는 것을 살펴보면 머리감기를 먼저 하고 비누질 그리고 행구는데 1개의 욕조에서 비누질을 하고 그 물로 행굼 수가 없어서 다른 욕조를 준비하여 그 욕조에 유아의 몸을 행구었다. 이때 산모는 목욕이 익숙하지 못하고 유아는 근골격이 완전하지 못해서 유아를 자주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3] 본 고안은 배경기술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1개의 욕조로 머리감기와 비누질이 가능하고 행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기술적 과제를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5]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욕조 몸체에 등받이 걸이를 할 수 있는 구멍을 구비하고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 부분에 걸이를 구비하여 등받이부 머리 쪽을 욕조 몸체에 걸고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하체를 받쳐주는 것에 접었다 펼 수 있는 다리받침을 구비하여 등받이를 목욕의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한다. 유아를 비눗물을 행굼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아를 행굼 수가 있다.

[0006] 그리고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었다. 다리받침을 구비하여 머리를 감기 때에는 양쪽의 다리받침을 펼쳐서 사용하게 한다.

발명의 효과

[0007] 본 고안인 제안하는 수단에 따르면 하나의 욕조에서 머리감기와 비누질과 행굼이 가능하여 유아나 유아의 보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09] 도 1은 본 고안의 사시도
- 도 2는 정면도
- 도 3은 평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10] 유아욕조는 유아를 위생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산모나 유아에게 있는 매우 중요한 유아용품이다. 기존의 유아욕조를 살펴보면 머리감기와 비누질, 행굼을 2개의 욕조에서 옮겨가면 하였는데 이는 유아의 근골격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으며 유아 목욕이 능숙하지 못한 유아의 관련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 유아목욕시키기이다.
- [0011] 본 고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0012] 산모가 유아의 신체에 비누질을 하고 행굼을 할 때에 등받이부를 욕조몸체부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하여 행굼물로 유아의 신체에 있는 비누를 씻겨내게 한다.
- [0013] 이를 위해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등받이 걸이를 구비한다. 그리고 욕조 몸체에 걸이를 걸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구비한다. 또한,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하체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등받이 다리받침을 구비한다.
- [0014] 유아를 비누질할 때에는 등받이 걸이만 사용하여 유아를 15도를 기울게 하여 편하게 하고 행굼을 할 때는 등받이부 다리받침을 펼쳐서 등받이부가 욕조 몸체 수면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행굼물로 비누를 씻겨냈다.
- [0015] 이렇게 하면 유아의 목욕을 시킬 때 하나의 목조에서 비누질과 행굼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아에게 편안함을 주고 산모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있다.
- [0016] 또한, 유아의 머리감기에 있어서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리받침을 구비하여 머리감기를 할 때는 등받이부의 양쪽 다리받침을 펼쳐서 유아를 등받이부에 올려놓고 머리감기를 하면 된다.
- [0017] 이렇게 하면 유아의 관련자 혼자서도 머리감기와 목욕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유아를 안락하게 머리감기를 하게 하고 유아의 관련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 줄수 있다

부호의 설명

- [0018] 욕조 몸체 : 10
- 등받이부 : 20 등받이부 머리 : 21 등받이부 하체 :22
- 다리받침 : 30

도면

도면1

